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9. 2.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훈단체 민간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명확화(안 제6조)

1. 호국영웅의 기념비 제작, 제례행사 등 선양사업
2.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사적지 순례사업, 기념식 또는 재현행사
3. 군민 안보교육, 캠페인 행사 지원 사업

나. 복지지원 대상 확대(안 제7조)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1)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15. 6. 26. ~ '15. 7. 15)결과 : 특이 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 4)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련 단체”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나, 비영리법인(단체) 중 보훈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보훈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관련 단체”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훈관련 예산지원) 군수는 보훈행사를 추진하는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행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호국영웅의 기념비 제작, 제례행사 등 선양사업
2.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사적지 순례사업, 기념식 또는 재현행사
3. 군민 안보교육, 캠페인 행사 지원 사업

제7조제3호 후단 중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관련 단체”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나, 비영리법인(단체) 중 보훈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u></p>
<p>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우리 군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u>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u></p>	<p>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 ----- ----- -----<u>보훈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관련 단체</u>----- ----- -----.</p>
<p>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u>보훈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6조(보훈관련 예산지원) 군수는 <u>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행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1. <u>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p> <p>2. <u>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u></p> <p>3. <u>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u></p> <p>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으로부터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p> <p>1.·2. (생략)</p> <p>3.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 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u>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u></p>	<p>1. <u>호국영웅의 기념비 제작, 제례 행사 등 선양사업</u></p> <p>2. <u>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사적지 순례사업, 기념식 또는 재현 행사</u></p> <p>3. <u>군민 안보교육, 캠페인 행사 지원 사업</u></p> <p>제7조(복지지원 등)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 -----<u>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u>----- -----</p>
---	---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용비용계획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3. 미첨부 사유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 1호에 따라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가 해당 없음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서 성 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전북임실052		
정책명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담당자명	최낙현	전화번호 063-640-202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1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민복지과)	<p>○ 제6조(보훈관련 예산지원)에 보훈 관련 예산지원 대상사업 명확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국영웅의 기념비 제작, 제례행사 등 선양사업 2.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사적지 순례사업, 기념식 또는 재현 행사 3. 군민 안보교육, 캠페인 행사지원 사업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p> <p>○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08월 12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복지과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63-640-2123)</p> <p>주민복지과장 귀하</p>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